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 북 구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주민자치 사업 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의 선임방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0조의 2(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해서는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한다.
- 나.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간사의 선임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받아야 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제29조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9. 8 ~ 9. 28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있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첨부

3) 비용추계 등 자료 :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반영내용
인권 영향 평가	인권침해 가능성은 없으나 기타의견 제시 : 간사 선임 방식을 선임으로 바꾸고 위원 동의로 추인을 받도록 명기 요구	반영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간사의 선임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받아야 한다.
성북동 주민 자치회	제15조 간사 1명을 지명하 되, 전체회의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견제장치를 마련하 고, 간사 자격을 자치위원 외 분과위원으로 확대 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해서는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한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간사의 선임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u><신 설></u></p>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 2(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해서는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한다.</p>
<p>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u>호선</u>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u>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 위원</u> 중에서 간사 1명을 <u>선임</u>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u>간사의 선임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받아야 한다.</u></p>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일부 개정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신진재